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시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69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주민참여시책 수립·시행 등	4
2.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시	10
3. 조합 등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의무구매	14
4. 조합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확대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25.
3. 회부연월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반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5제5항 후단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민참여시책 수립·시행 등(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7의2호, 제7조)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기본계획에 협동조합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¹⁾

[표 1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방안</u> <u>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u> <u>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u> <u>다. 그 밖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u>
8. ~ 10. (생략) ③ (생략) <u>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u>	8.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u>

현행	개정안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신·재생에너지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연차별 목표</u> <u>2.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방법,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u> <u>3.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방안 및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경감 방안</u> <u>4.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u> <u>5. 직전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u> <u>6. 그 밖에 지역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시군구계획을 마련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④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군구계획과 연</u>

현행	개정안
	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그 밖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국가 주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나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²⁾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지역 현장에까지 효과적으로 연계·이행되기 어렵고,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개별적이거나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기적 대응에 그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여건과 주민의 수용성을 반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보급·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제2항제7호의2는 기본계획 수립 시 “조합 등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 등을 결정하는 상위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구체적 지원 방안 규정의 적정성,³⁾ 조합 등만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경우 중소 영세사업자 등 타 주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에너지법」 제7조⁴⁾

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위종합계획으로, 구체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률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경우 정책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여건변화 반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4)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계획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	지역계획(개정안)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1. 신·재생에너지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연차별 목표 2.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방법, 자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시 지원방안 및 임대료 경감 방안 4. 관할 시·군·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 5. 직전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역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나. 조합 등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시(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⁶⁾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인근 주민이 채권 구입, 지분 매입,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 1. 28.>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6)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u>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u> <u>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u> <u>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분 매입</u> <u>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조성하는 펀드 가입</u> <u>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근 주민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u>

현행법 제11조⁷⁾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과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 제10조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협약 대상 기관들은 주로 조사·연구, 평가·인증,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과, 보급사업, 공급의무화 지원, 국제협력 등을 위한 공신력과 공정성이 있는 기관인데 비해,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른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은 제10조에 규정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 또는 공신력과 공정성을 보유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의 수혜를 받는 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한편, 안 제11조의2는 인근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권고하고, 참여 시에는 발전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다만, 현행법 제27조의2⁸⁾에 이미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게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9)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중 주민참여 관련 내용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과의 이익공유 제도화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 참여시 투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 마련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신규) 확대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21년)

다. 조합 등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의무구매(안 제12조의5제5항 등)

개정안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¹⁰⁾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 ④ (생략)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 ----- ----- ----- <u>.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여야 한다.</u>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생략)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	⑤ ----- -----

10)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인용한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 ----- ----- .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생략)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발전공기업 등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이행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하 “조합 등”)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합 등을 통한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공급의무자가 조합 등의 REC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면,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의 자율적인 공급의무 이행 및 의무이행 비용 최적화가 제한될 소지가 있고, REC 현물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REC 가격 하락시 다른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REC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RPS 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쟁입찰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¹¹⁾.

1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2024.5.) 발표

(안 제26조제5항)

[표 15] 개정안 조문대비표

– 17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을 하는 자 중 “조합 등”이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해 임대료의 경감 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¹²⁾에 따라 이미 일반적인 임대료율(5%) 대비 50%가 감면된 임대료율(2.5%)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도 일반 사업자에 비해 임대료 경감 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

1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가.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자활기업

라. 마을기업

13)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 적용되는 임대료율은 ‘2.5%이상’이며,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 적용시 추가로 50%가 감면된 1.25%가 적용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이미 일반적인 임대료를 대비 50%가 감면된 임대료율이 적용되어 중복수혜 우려가 있고, “주민자치회”의 경우 발전사업·재산임대 행위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에 대해 면밀한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⁴⁾는 국유재산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경감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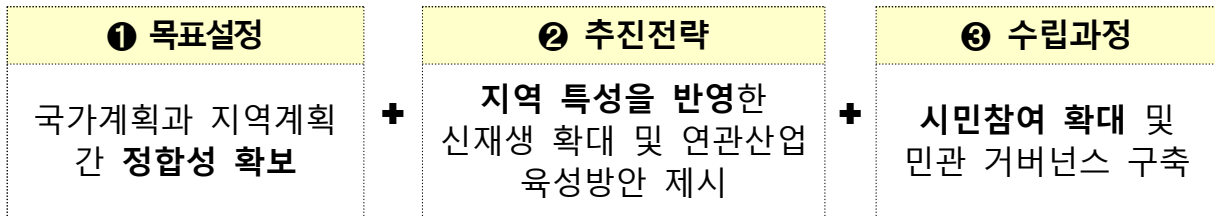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참고 1

지역에너지계획 개요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19.6)」을 통해 기본방향 제시



① (목표설정)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간 정합성 확보

- 지역별로 상이했던 수립 시기*를 통일하여 3차 에기본 등 국가 정책 방향을 지역에너지계획에 적기 반영

* 2차 에기본 (‘14)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14)경기·강원·전남·경북·경남 (‘15)서울·대구·광주·세종 (‘16)충남·전북 (‘17)부산·대전·울산·충북·제주 (‘18)인천

- 국가 정책목표를 감안해 ‘25년까지의 정량목표*와 세부 사업계획 제시

* 최종에너지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

** 중앙정부와 달리 중장기사업의 구체화가 곤란한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25년까지의 단기 목표 설정

② (추진전략)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제시

- 지역별 여건, 강점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산업 모델 발굴·육성

③ (수립과정)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 수립과정에서 소수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의견수렴 강화
- 지역 에너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관 협력방안 모색

참고 2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민의 발전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

< 주민참여제도 세부내용 >

- 관련근거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 및 RPS 지침(고시) 제7조의2, 제7조의3 등
- 대상사업 : 태양광 500kW 이상 또는 풍력 3,000kW 이상 재생e 발전사업
- 참여자격 : 인근 거주민(1년↑) 등이 지분·채권·펀드의 방식으로 발전사업 참여
- 이익공유 : 주민참여 추가 REC로 인한 수익 지역주민 제공 의무(「신재생에너지법」)

2. 가중치 부여 기준

- 지역·인접주민 등*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 REC 가중치 부여

* 발전소 인접지역(법정리·동 등) 주민, 인근 농축산인 및 피해보상 대상 어업인 등

< 주민참여 추가 REC 가중치 부여 기준(RPS 고시) >

총사업비 대비 주민참여비율	REC 추가 가중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준수)	육상풍력	해상풍력
1% ~ 2%	없음	없음	없음	0.075
2% ~ 3%	0.08	0.10	0.10	0.15
3% ~ 4%	0.12	0.15	0.15	0.225
4% 이상	0.16	0.20	0.20	0.30

3. 주민참여 대상 범위

<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RPS 고시) >

구분	설비용량	지역의 범위
태양광	500kW~100MW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100M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육상 풍력	3MW~100MW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100M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해상 풍력	3MW~100MW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읍·면·동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이 속하는 읍·면·동
	100MW 이상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이 속하는 시·군·구
송전 설비	-	발전소 설치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으로, 아래 지역 중 하나가 속한 행정자치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2.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 :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3. 15만 4천볼트 변전소 :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